

제3장 원산지 규정

제1절 원산지 규정

제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점까지의 화물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쪽 당사국이 지정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정부 당국을 말한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FOB)이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가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국에서 컨센서스로 인정되거나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받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은 추후 다른 생산과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될 수 있는 재료 또는 생산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목적상, “상품” 과 “생산품” 이란 용어는 호환되어 사용될 수 있고 “상품” 과 “생산품” 이란 용어는 이에 따라 해

석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는 제1.1조(일반정의)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발급 기관이란 이 장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주고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 기관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재료는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하위 조립품을 포함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상품은 제1.1조(일반정의)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란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와는 다르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란 재료가 세번의 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RVC) 또는 이러한 기준들이 결합된 기준을 충족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말한다.

생산자란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덧사냥, 수

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제3국이란 비당사국을 말한다.

제3.2조 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고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3.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이 경우 그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제3.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조제1항가호의 의미에서, 다음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낚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그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잡힌 그 밖의 생산품.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수역, 해저 및 해저 하부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¹가 있어야 한다.
-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 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바호 또는 사호에 언급된 생산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이 경우 이 상품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어야 한다.
- 차. 다음의 상품

-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¹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제3.3조바호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국과 그 연안국의 정부 간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 받은 민간기관 간의 협정 또는 약정에서 비롯되는 연안국의 어로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4조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부속서 3-가에 명시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 라 한다)은 다음의 공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산정된다.

가. 직접법/집적법

$$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 + \text{직접 노무비} + \text{직접 경비} + \text{이윤} + \text{그 밖의 비용}}{\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이 경우,

- 1)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상품의 생산에서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가치이다.
- 2) 직접 노무비는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을 포함한다.
- 3) 직접 경비는 총 간접비용이다. 그리고
- 4) 그 밖의 비용은 수출을 위하여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 수단에 상품을

적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운송비용, 보관 및 창고, 항만, 중개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는

나. 간접법/공제법

$$\text{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비원산지재료가치(VNM)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 1) 그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또는
- 2)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

제3.5조

특정 상품의 취급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반도에 소재한 개성공업지구에서,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생산 가공 또는 공정이 이루어진 후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부속서 3-나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6조

누적

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 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 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제1항에 규정된 누적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조를 검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7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영역에서 다음의 공정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상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단순²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아.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² 이 조의 목적상, “단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기술한다.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³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단순 시험 또는 측정, 또는

너. 동물의 도살⁴

2.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때, 제1항에 언급된 것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최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제3.8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³ 이 조의 목적상, “단순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⁴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비원산지 재료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적인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재료는 그 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원산지로 취급된다. 이 경우, 그 재료를 그 상품의 생산자가 생산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제3.9조

직접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 그 상품이 중간 경유국의 관세행정기관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

제3.10조

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

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RVC 요건을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제3.11조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1. 상품의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2.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제3.2조제1항가호에 따라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

나. 그 상품이 제3.2조제1항나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또는

다. 그 상품이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요건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상품이 RVC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R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그 상품의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3.12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의 일부로 고려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부속서 3-가에 규정된 RVC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가치는 그 상품의 R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가.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3.13조

중립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제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다음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사. 촉매제 및 용제, 그리고

아. 제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제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3.14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 여부는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에 따라, 또는 혼합된 경우 수출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에 따라 결정되며,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원산지 운영 절차

제3.15조
원산지 증명

1. 다음은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된다.

가. 제3.16조에 따라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또는

나. 제3.17조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2. 원산지 증명은

가. 서면 또는 수입 당사국이 통보한 전자본을 포함한 그 밖의 매체로 작성된다.

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명시한다. 그리고

다.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3.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제3.16조
원산지 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이 발급한다.

2.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은 수출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한다.

3. 원산지 증명서는

가. 부속서 3-라에 규정된 서식으로 작성된다.

나. 고유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를 포함한다.

다. 영어로 작성된다. 그리고

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의 공인된 서명 및 관인을 포함한다. 그 서명 및 관인은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적용된다.

4. 원산지 증명서는

가. 단일 선적에 대하여 발급된 둘 이상의 송장을 기재할 수 있다. 또는

나. 복수의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각 상품은 개별적으로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원산지 증명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은

가. 신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기존 원산지 증명서를 무효화할 수 있다. 또는

나. 오류를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또는 정정사항을 기재하여 기존 원산지 증명서를 수정할 수 있다. 모든 변경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의 공인된 서명 및 관인으로 인증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발급 기관의 이름, 견본 서명⁵, 주소 및 관인의 날인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모든 후속 변경은 신속하게 통보된다. 양 당사국은 지난 3년 동안의 그러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웹

⁵ 발급 당국이 수입 당사국이 접근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견본 서명을 배포하기 위한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사이트는 양 당사국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7.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달력상의 7일⁶ 내에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또는 제5항가호에 언급된 상황에서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 후 1년 내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8. 기존 원산지 증명서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은 서면으로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에 기존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 등본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등본은

가. 기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 후 1년 내에 발급된다.

나. 기존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신청을 기초로 한다.

다. 기존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및 발급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라. “진정 등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제3.17조

원산지 신고서

1. 제3.15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제3.19조의 의미에서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다.

2. 원산지 신고서는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달력상의 7일”은 선적일 자체를 포함한다.

가. 부속서 3-다에 따라 작성된다.

나. 영어로 작성된다.

다. 증명인의 이름 및 서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라.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날짜를 포함한다.

제3.18조

제3자 송장

수입 당사국은 송장이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 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상품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3.19조

인증수출자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수출자로서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 대한 인증을 규정한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증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등록된다.

나. 그 수출자는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알고 이해한다.

다.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만족스러운 수준의 수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라.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위험관리에 따라 측정된 우수한 준수 기록을 갖추고 있다.

마. 그 수출자는 무역업자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상품의 원산지 지위 및 제3.22조에 따른 검증에 협조하고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자의 준비 자세를 확인하는 생산자의 신고서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바.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잘 정리된 장부 및 기록 유지 체제를 갖추고 있다.

2.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자국의 인증수출자 절차 및 요건을 공개하고,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나. 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다.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증번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라. 부여된 인증과 관련한 안전한 웹사이트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양 당사국의 인증수출자에 관한 정보⁷를 다른 쪽 당사국과 교환한다.

3. 제2항라호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접근 가능하고 위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국의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그 호에 언급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⁷ 이 정보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 발급일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의 만료일, 그리고 최소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류 수준에서, 인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을 포함한다.

4. 인증수출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가. 제3.25조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인증의 사용을 감독하는 목적상 기록 및 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나. 인증수출자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허용 받은 상품으로서, 그 신고서 작성 시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다.

다. 오용을 포함하여, 작성된 모든 원산지 신고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리고

라. 나호에 언급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변경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신속하게 알린다.

5.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검증을 포함하여, 인증의 사용을 감독하고, 제1항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한다.

6.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증수출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제3.20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원산지 상품에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다음을 규정한다. 수입자는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신고서를 세관 신고 시 작성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신고서 작성 당시에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지닌다. 그리고

다. 수입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기존 원산지 증명 또는 진정 등본을 수입 당사국에 제공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보다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요건을 면제한 상품인 경우

다만,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적절한 경우, 수입자에게 상품이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수입자는 제3.9조에 언급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증거를 제공한다.

6. 원산지 증명이 그 제출기간의 만료 후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된 경우로서 불가항력 또는 수입자나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그 밖의 타당한 이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 그러한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 관행에 따라 여전히 수용될 수 있다.

제3.21조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이 그 당사국으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리고 그 상품이 수입된 날 후 그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납부된 모든 초과 관세,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증명 및 그 밖의 증거, 그리고

나. 신청된 특혜관세대우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를 수입 시 그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2조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수단으로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로부터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과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상품의 원산지 검증 지원의 서면 요청

라. 시설 및 상품의 생산 가공을 시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원산지를 언급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검증⁸, 또는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절차

2. 수입 당사국은

가. 제1항나호의 목적상, 그 상품의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명의 사본 및 요청 이유와 함께 서면 요청을 송부한다.

나. 제1항다호의 목적상,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증명의 사본 및 요청 이유와 함께 서면 요청을 송부한다. 그리고

다. 제1항라호의 목적상, 방문이 이루어질 사업장의 수출자나 생산자, 그리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서면 동의를 요청하고, 방문에 대하여 제안된 날짜 및 장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적을 적시한다.

3. 수입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검증은 수입 당사국과 수출 당사국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수행될 수 있다.

4. 제1항가호부터 라호까지에 따른 검증의 경우, 수입 당사국은

가. 수출 당사국의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발급 기관이나 권한 있는 당국

⁸ 이 호에 따른 방문 검증은 다호에 따른 검증 절차가 수행된 후에만 이루어진다.

이 제1항가호부터 다호까지에 따른 정보의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에서 90일 사이에 응답하도록 허용한다.

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라호에 따른 방문 검증에 대한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내에 그 요청을 동의 또는 거부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다.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접수일부터 90일 내에 검증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

5. 제1항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나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검증 결과를 그 결과의 이유와 함께 서면 통보한다.

6.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은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나, 그러한 반출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3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1.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이 장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2.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결정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는 그 결정의 이유를 포함한다.

3.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결정할 수 있고,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나. 제3.22조에 따른 정보의 서면 요청에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다. 제3.22조에 따른 방문 검증 요청이 거부된 경우

제3.24조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서류 간 사소한 불일치, 정보의 누락, 타자 오류 또는 지정된 칸으로부터의 돌출과 같은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가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제3.25조

기록 유지 요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한다.

가. 자국의 수출자, 생산자, 발급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 증거가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그리고

나. 자국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

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유지될 수 있다.

제3.26조

협약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정신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장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한다.

제3.27조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방식으로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제3.28조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제3.9조에 따라 그 당사국으로 운송되고 있었던 경우, 또는

나. 그 당사국으로 수입되지 않았던 경우

다만, 그 상품이 제3.9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당

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80일 내에 제3.20조에 따른 유효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29조 **벌칙**

각 당사국은 이 장에 관련된 자국의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벌칙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3.30조 **의사소통 언어**

수입 당사국과 수출 당사국 간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3.31조 **접촉선**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0일 내에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그 하나 이상의 접촉선의 연락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연락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3.32조 **직접운송의 증명서류**

제3.9조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양 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서류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나. 제3.9조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부속서 3-나 특정 상품의 취급

1.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하여 재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3.7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품으로 재수입되고, 제7항에 언급된 목록과 후속 개정에 반영된, 제3.5조에 언급된 “특정 상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¹는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4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나.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의 관련 규정은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2. 제3.5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이 장의 제2절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²이 발급한다.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그 상품에 제3.5조가 적용됨을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한다.

다.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 제2절의 관련 조는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라. 한국은 이 장 제2절의 관련 조에 따라 캄보디아 관세행정기관이 제3.5조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¹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란 운송비를 포함하여, 한국과 캄보디아의 역외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² 한국의 경우, 이 부속서의 목적상, “발급 당국”이란 한국 관세행정기관을 말한다.

3.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가. 한쪽 당사국이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양과 그러한 조건하에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의 증가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그러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간 동안 그러한 상품에 대한 제3.5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3.5조의 적용을 정지하려는 한쪽 당사국은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2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제안된 정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다. 가호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정지 조치를 한 당사국이 그 정지가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어야 한다.

라.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가호에 따른 제3.5조의 적용의 정지는 다른 쪽 당사국에 2개월 전 사전통보 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지가 발효되기 전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당사국이 가호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은 제3.5조의 적용을 다음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1)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

2) 사전 협의에 대한 의무가 없다.

3) 정지의 기간 또는 빈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4. 연례 검토

가.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서 제3.5조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 수출 당사국은 이전 일년 동안 수입 당사국에 대한 제7항에 나열된 각 상품의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3.5조의 운영에 대한 간략한 사실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2) 수입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락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이유를 포함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에 대한 거부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한다.

나. 공동위원회는 제3.5조의 이행과 운영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 정보를 수출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다. 공동위원회는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권고를 할 수 있다.

5. 분쟁해결

이 부속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제8장(분쟁해결)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6.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제5.2조(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를 포함하여 이 협정상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상품 목록

다음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이다. 한쪽 당사국은 이 항에 언급된 목록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이를 신의성실하게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채택된다.

번호	HS 2002	상품명
1	2923.90	- 기타
2	3907.10	- 폴리아세탈수지
3	3907.20	- 그 밖의 폴리에테르
4	3908.10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
5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6	3923.10	-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7	3923.30	-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3923.50	-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9	3923.90	- 기타
10	3926.90	- 기타
11	6107.11	- - 면으로 만든 것
12	6107.12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6107.1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4	6107.91	- - 면으로 만든 것
15	6107.92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6	6107.9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7	6108.21	- - 면으로 만든 것
18	6108.22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9	6108.2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0	6108.91	- - 면으로 만든 것
21	6108.92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2	6108.9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3	6111.20	- 면으로 만든 것

번호	HS 2002	상품명
24	6114.20	- 면으로 만든 것
25	6115.1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6	6115.20	-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7	6115.92	- - 면으로 만든 것
28	6115.93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9	6115.9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0	6117.10	- 숄(shawl)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 · 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31	6117.20	- 넥타이류
32	6117.90	- 부분품
33	6201.11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34	6201.12	- - 면으로 만든 것
35	6201.13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36	6201.92	- - 면으로 만든 것
37	6201.93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38	6202.12	- - 면으로 만든 것
39	6202.13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40	6202.92	- - 면으로 만든 것
41	6202.93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42	6203.12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43	6203.1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4	6203.21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5	6203.31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6	6203.32	- - 면으로 만든 것
47	6203.33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48	6203.42	- - 면으로 만든 것
49	6203.43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0	6203.4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1	6204.11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2	6204.12	- - 면으로 만든 것

번호	HS 2002	상품명
53	6204.13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4	6204.31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5	6204.32	- - 면으로 만든 것
56	6204.33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7	6204.3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8	6204.41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9	6204.42	- - 면으로 만든 것
60	6204.43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	6204.44	-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2	6204.4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	6204.51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4	6207.21	- - 면으로 만든 것
65	6212.10	- 브래지어
66	6212.20	- 거들과 팬티거들
67	6212.90	- 기타
68	6213.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69	6213.20	- 면으로 만든 것
70	6401.10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71	6401.91	- - 무릎을 덮는 것
72	6401.92	-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73	6401.99	- - 기타
74	6402.12	-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75	6402.19	- - 기타
76	6402.20	-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77	6402.3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78	6402.91	- - 발목을 덮는 것
79	6402.99	- - 기타
80	6403.12	-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81	6403.19	- - 기타

번호	HS 2002	상품명
82	6403.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3	6403.30	- 신발류(베이스나 플레이트폼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안창 또는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은 제외한다)
84	6403.4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85	6403.51	- - 발목을 덮는 것
86	6403.59	- - 기타
87	6403.91	- - 발목을 덮는 것
88	6403.99	- - 기타
89	6404.11	-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90	6404.19	- - 기타
91	6404.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2	6405.10	-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93	6405.20	-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94	6405.90	- 기타
95	6406.10	-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96	6406.20	-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7	6406.91	- - 목재로 만든 것
98	6406.99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99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100	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부속서 3-다
최소 정보 요건

1. 원산지 증명서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6단위)

마.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바. 원산지 부여 기준

사.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신고

아. 발급 기관의 공인된 서명 및 관인과 함께 제공된 증거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발급 기관의 증명

자. 원산지 국가

차. 송장번호, 출발일, 선박명이나 항공기 편명 그리고 하역항과 같이 탁송물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

카. “본선인도가격(FOB)”(RVC 원산지 부여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타. 상품의 수량

2. 원산지 신고서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6단위)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바. 고유한 참조번호

사. 원산지 부여 기준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서명권자의 증명

자. 원산지 국가

차. “본선인도가격(FOB)”(RVC 원산지 부여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카. 상품의 수량

부속서 3-라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2사본/제3사본)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비용) 서식 KC 발행국 (국가) 뒷면 주해 참조					
2.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수입자나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4. 운송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항일 선명/편명 등 하역항	5. 담당자란 <input type="checkbox"/>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관세대우 <input type="checkbox"/> 특혜관세대우 비부여(사유를 기재합니다) 수입국의 서명권자의 서명					
6. 품목번호	7. 포장의 표시 및 번호	8. 포장의 수량 및 종류, 상 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기재 및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HS	9. 원산지 기준(뒷면의 주해를 참조합니다)	10.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및 가격(RVC 기준이	11. 송장 번호 및 날짜	

		번호를 포함합니다)		사용된 경우에만 FOB를 기재합니 다)	
<p>12. 수출자 신고</p> <p>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p> <p>.....</p> <p>(국가)</p> <p>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 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p> <p>.....</p> <p>(수입국)</p> <p>.....</p> <p>장소 및 날짜, 서명권자의 서명</p>			<p>13. 증명</p> <p>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p> <p>.....</p> <p>장소 및 날짜, 서명 및 증명기관의 관인</p>		
<p>14. <input type="checkbox"/> 제3자 송장</p>					

뒷면 주해

1.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KC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하는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이다.
2. 조건: KC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위에 명시된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 1) 목적지 국가에서 양허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명에 해당되어야 한다.
 - 2) KCFTA 제3장(원산지 규정) 제3.9조에 따라 운송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 3) KCFT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충족한 원산지 기준을 이 서식의 제9란에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서식의 제12란에 이름이 기재된 첫 번째 국가의 생산 또는 제조 환경	제9란에 기입
가. 이 장의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PE”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번변경 - RVC - 세번변경+RVC - 특정 공정 	- “CTC” -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RVC” : 예, “RVC 45퍼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결합 규정: 예, “CTH + RVC 40퍼센트” - “특정 공정”
라. 제3장(원산지 규정) 제3.5조를 충족하는 상품	“제3.5조”

4. 각 품목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탁송물의 모든 상품은 각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다른 크기의 유사한 품목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 특히 관련이 있다.
5. 상품명: 상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상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6. 본선인도가격(FOB):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RVC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 10란에 본선인도가격(FOB)을 반영한다.
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번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번호(6단위)는 수입 당사국의 번호를 말한다.
8. 수출자: 제12란의 “수출자” 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
9. 담당자 기재란: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특혜관세의 부여 여부를 제5란의 해당 상자에 (√) 기재해야 한다.
10. 제3자 송장: 송장을 제3자가 발급하는 경우, “제3자 송장” 란에 체크 표시(√)를 해야 할 것이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이름과 국가 같은 정보가 제14란에 기재된다.

부속서 3-마
원산지 신고서 서식 예시

원산지 신고서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참조번호:					
2.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3.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4. 상품명(송장번호 및 수량을 포함한다)	5. HS 세번 #	6. 원산지 기준	7. 생산자	8. RVC 기준 이 사용된 경우에만, FOB	9. 원산지 국가
10. 비고					
본인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 이 서류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인은 이 서류상 또는 이 서류와 관련한, 모든 허위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이 신고서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에 따라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신고서를 받은 모든 인에게 이 신고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 그 상품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며 그 상품에 대하여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합니다. 이 신고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 쪽으로 구성됩니다.					
11. 공인된 서명:			회사:		
이름:			직위:		
년 월 일 날짜: -----/-----/-----			전화번호:		
			팩스: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에 대하여 신고서 방식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의 지침이 서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상, 이 서류는 수출자가 수기 또는 타자 형식으로 읽기 쉽게 빠짐없이 작성하고, 수입자가 제3.20조제2항나호에 따라 신고서 작성 당시에 지닌다. 추가 기재가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한다. 또한, 원산지 신고서의 고유한 참조번호를 기재한다.

제2란(선택사항):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신고서에 포함되는 경우, “다수”로 기재하고, 제4란에 기술된 상품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한다. 제공된 정보가 비밀인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제3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제4란: 상품의 품명을 제공한다. 그 품명은 그 상품에 대한 송장의 품명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명에 연계된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상품의 수량을 포함하여 상업 송장에 기재된 송장 번호가 기재된다. 수출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고서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란: 제4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 HS 세번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6란: 제4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 아래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기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제1란에 이름이 기재된 첫 번째 국가의 생산 또는 제조 환경	제6란에 기입
가. 이 장의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PE”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RVC - 세번변경+RVC - 특정 공정	- “CTC” -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RVC” : 예, “RVC 45퍼센트” -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결합 규정: 예, “CTH + RVC 40퍼센트” - “특정 공정”
라. 제3장(원산지 규정) 제3.5조를 충족하는 상품	“제3.5조”

제7란: 제4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예” 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니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이 신고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기초하는지에 따라 (1) 또는 (2)를 기재한다: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출자의 완전한 인지,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신뢰

제8란: 본선인도가격(FOB)은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RVC 기준이 적용될 때에만 반영된다.

제9란: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 한국(KR), 캄보디

아(CA)

제10란: 이 란은 제4란에 기술된 상품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판정을 받는 경우와 같이 이 신고서에 관하여 비고가 있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 발급 당국, 참조번호 및 발급일이 기재된다.

제11란: 이 란은 수출자의 서명권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기재될 날짜는 신고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다.